

의정활동보고서

제199회 임시회(2005. 5. 26 ~ 6. 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익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제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제199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중에 독도 방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체전 등과 당면한 도정 수행에 불철주야로 노력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제관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어린이나 노인들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등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에 대한 헌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정은 생활속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식처이자, 우리 사회가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달이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소홀함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재 점검하고 도민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그 어느 때 보다는 분주한 시기입니다.

일손돕기와 농업용수 확보 등 영농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시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깊이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모든 뜻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부터는 본회의 회의장면이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VI. 기타사항

VII. 도정질문

VIII. 5분 자유발언

부 록

□ 조 례 안

1. 경상북도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2.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4.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 의 안

1. 2005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변경 운용계획안
2.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보전 지방채 발행안
.....

☐ 건 의 · 결 의 안

1.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대정부 촉구결의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연구개발(R&D)특구지정 요건완화 촉구 건의문 ..

☐ 기 타 안

1. 2004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검사위원 검사기간 연장의 건

☐ 예 산 안

1.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추가
경정 예산안
2.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추가
경정 예산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99회 임시회는 2005년 5월 26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여 6월 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2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5월 26일(목)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1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도정질문(권준택·한혜련·장찬식·김정기의원)을 청취한 후 휴회 하였다.

각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13일간 예산안·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사하였다.

6월 9일(목)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육환경위 박종욱의원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조례안과 연구개발(R&D)특구 지정 요건완화 촉구 건의문 등을 의결한 후 제1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 공고일 : 2005. 5. 11(수)

라. 집회일시 : 2005. 5. 26(목)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5. 5. 26 ~ 6. 9 (15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 (누계 77회)

○ 상임위 회의 : 12회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5.26(목) 11:00 (제1차)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김기홍(영덕군 1) - 기획과학위원회 · 김진기(영덕군 2) - 행정사회위원회 · 이우경(경산시 1) - 교육환경위원회 2. 제1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5.26(목) 11:00 (제1차)	4.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도정에 관한 질문 ○ 권준택의원(칠곡군, 교육환경) ○ 한혜련의원(비례, 경제문화) ○ 장찬식의원(영주시, 기획과학) ○ 김정기의원(김천시, 경제문화)	
2005. 6. 9(목) 11:00 (제2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연구개발(R&D)특구지정 요건완화 촉구 건의문 3.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4.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5.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 유아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0.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경상북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경상북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보전 지방채 발행안 14.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05년도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6. 9(목) 11:00 (제2차)	16.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9.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가결 철회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5.31(화) 15:30(제1차)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제20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 "

〈기획과학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5.31(화) 11:00(제1차)	○ 연구개발(R&D) 특구지정 요건완화 촉구 건의문 ○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과학정보산업국, 공무원 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5.31(화) 11:00(제1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정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5. 6. 1(수) 11:00(제2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안	원안가결 " " "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5.27(금) ~ 5.29(일)	○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관 및 경상북도 선수단 격려	청주
2005. 5.30(월) 11:00(제1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환경산림수산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수산자원종합개발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원안가결
2005. 5.31(화) 11:00(제2차)	○ 경상북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5.31(화) 11:00(제2차)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4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보전 지방채 발행안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원안가결 "

〈농정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5.30(월) 11:00(제1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농정국,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 시험소, 농업기술원, 친환경생명산업 지원사업소 소관	수정가결

〈경제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5.30(월) 11:00(제1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5.31(화) 11:00(제1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재난국, 소방본부 소관 ○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변경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6. 2(목) ~ 6. 8(수)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20 (318)	19 (314)	15 (275)	4 (37)	(2)	1 (2)	(2)	
조 례 안	소 계	11 (153)	11 (151)	9 (131)	2 (19)	(1)		(2)	
	의회 제안	2 (16)	2 (16)	1 (6)	1 (9)	(1)			
	도지사 제출	5 (111)	5 (109)	4 (101)	1 (8)			(2)	
	교육감 제출	4 (26)	4 (26)	4 (24)	(2)				
예산 · 결산		3 (28)	2 (27)	1 (13)	1 (14)		1 (1)		
동의 · 승인		2 (80)	2 (80)	2 (79)	(1)				
건의안		1 (12)	1 (12)	1 (11)	(1)				
결의안		1 (12)	1 (12)	(11)	1 (1)				
기 타 안		2 (33)	2 (32)	2 (30)	(1)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부결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승학의원의외 14인 발의, 2003. 9. 2, 본회의)
- ②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정기의원의외 16인 발의, 2004. 9. 1, 의회운영위원회)

〈철회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철회안
(김정기의원의외 32인 발의, 2004. 7. 2, 본회의)
- ②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박영화의원의외 20인 발의, 2005. 6. 9, 본회의)

〈계류 중인 안건 현황 ; 4건〉

- ① 경상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2. 10. 15, 행정사회위원회)
- ②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3. 9. 8, 기획위원회)
- ③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④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 회	계 류
		가 결							부 결		
		계	조 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22 (320)	19 (312)	11 (151)	2 (27)	2 (80)	1 (12)	1 (12)	2 (30)	(2)	1 (2)	(4)
의 회 운 영	1 (11)	1 (10)	(6)				(2)	1 (2)	(1)		
기 획 과 학	3 (25)	3 (24)	1 (14)		(6)	1 (2)	1 (1)	(1)			(1)
행 정 사 회	4 (87)	4 (86)	4 (59)		(24)	(1)	(2)				(1)
교 육 환 경	5 (44)	5 (44)	4 (32)		(10)	(1)		(1)			
농 정	(19)	(19)	(6)		(11)	(2)					
경 제 문 화	1 (45)	1 (45)	1 (19)		(22)	(2)	(2)				
건 설 소 방	1 (22)	1 (22)	(12)		1 (7)	(2)		(1)			
특 별	2 (27)	2 (27)		2 (27)							
본회의	3 (40)	2 (35)	1 (3)			(2)	(5)	1 (25)	(1)	1 (2)	(2)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4 (119)	(13)	(13)	1 (12)	(22)	(9)	(9)	(14)	2 (12)	1 (15)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6)		(1)		(1)		1 (2)			(2)
행 정 사 회	(15)	(8)	(3)	(1)	(1)					(2)
교 육 환 경	2 (26)			(1)		(9)		(13)	2 (2)	(1)
농 정	(9)			(1)	(1)				(7)	
경 제 문 화	2 (27)	1 (2)	(9)	1 (4)			(7)			1 (5)
건 설 소 방	(33)	(3)		(5)	2 (19)			(1)	(3)	(2)
특 별 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7 (118)	7 (118)				1 (1)
의회운영						
기획과학	1 (6)	1 (6)				
행정사회	(15)	(15)				
교육환경	3 (26)	3 (26)				
농 정	(9)	(9)				
경제문화	2 (26)	2 (26)				1 (1)
건설소방	2 (33)	2 (33)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김정기 의원 외 30인 (2005. 5. 16)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안	행정사회 (2005. 5. 20)
경상북도지사 (2005. 5. 19)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상임위 (2005. 5. 20)
경상북도지사 (2005. 5. 19)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5. 5. 20)
경상북도지사 (2005. 5. 19)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문화 (2005. 5. 20)
경상북도지사 (2005. 5. 19)	2005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변경 운용계획안	건설소방 (2005. 5. 20)
경상북도교육감 (2005. 5. 20)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환경 (2005. 5. 20)
경상북도교육감 (2005. 5. 20)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5. 5. 20)
경상북도교육감 (2005. 5. 20)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 기관이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환경 (2005. 5. 20)
경상북도교육감 (2005. 5. 20)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환경 (2005. 5. 20)
경상북도교육감 (2005. 5. 20)	경상북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교육환경 (2005. 5. 20)
경상북도교육감 (2005. 5. 20)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결손액 보전 지방채 발행안	교육환경 (2005. 5. 20)
경상북도지사 (2005. 5. 23)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5. 5. 23)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5. 4. 2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개정조례	2005. 5. 16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5. 5. 2 ~ 5. 4(3일)	전라남도의회 순천, 광양	-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주요사업장 시찰 - 참석의원 : 권경호 예결특위위원장 외 예결특위 위원 10명

VI. 기타사항

○ 포항 영일만 신항 컨테이너부두 기공식

- 일 시 : 2005. 4. 28(목) 11:00
- 장 소 : 포항 북구 용한리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축사), 이원만 기획과학위원장, 윤경희 의원

○ 2005년도 경상북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

- 일 시 : 2005. 4. 28(목) 14: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축사), 이원만 기획과학위원장, 황복희 의원

○ 독도 사랑 경북농업인대회

- 일 시 : 2005. 4. 29(금) 11:00
- 장 소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 지방행정개혁 국민대토론회

- 일 시 : 2005. 5. 2(월) 14:00
- 장 소 : 국회도서관
- 참 석 : 우성호 의원

○ 고품질 감 재배기술 심포지움

- 일 시 : 2005. 5. 4(수) 10:30
- 장 소 : 상주시농업기술센터
- 참 석 : 정상진 농정위원회간사(축사)

○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교부

- 일 시 : 2005. 5. 9(월)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권종연 의원, 김석호 의원, 박종욱 의원

○ 제43회 도민체전 개회식

- 일 시 : 2005. 5. 10(화) 19:00
- 장 소 : 안동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도의원

○ 경북지구청년회의소 회장단과 도의회 JC동우회 간담회 및 오찬

- 일 시 : 2005. 5. 13(금)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호 의원,
장찬식 의원, 이상태 의원

○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환영 만찬

- 일 시 : 2005. 5. 13(금) 19:00
- 장 소 : 산촌식당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2회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대회

- 일 시 : 2005. 5. 17(화) 15:00
- 장 소 : 영천시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한혜련 경제문화위원회 간사

○ 2/4분기 대구·경북기관단체장 간담회

- 일 시 : 2005. 5. 17(화) 18:30
- 장 소 : 호텔인터블고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청소년 수련관 이사회

- 일 시 : 2005. 5. 18(수) 16:00
- 장 소 : 김천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

○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기자 간담회)

- 일 시 : 2005. 5. 23(월) 10:5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05. 5. 24(화) 15:00
- 장 소 : 울산광역시의회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VII. 도정질문

□ 2005년 5월 26일(목) 제1차 본회의

◎ 권준택의원 ◎

○權竣澤議員 칠곡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권준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9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국내·외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정세를 보면 우리 경북은 그 속에서 그야말로 경쟁의 최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정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경북의 진정한 복지미래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듯이 우리 300만 경북인들은 얼마든지 오늘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도정질문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효과적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내 대기업이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허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토균형발전이 국정 최대의 목표라고 늘 강조하여왔던 터인데 위원회의 이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인데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찌 지금 와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우리 경북지역의 기업유치는 앞으로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왜 수도권에 틀만 있으면 가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질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며, 기

업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의 우수성, 높은 고급인력의 확보 가능성 등 때문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려는 경향은 타할게 되지 못합니다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책기조로 삼아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에 최소한의 경쟁력을 키우는가 하였더니 이제 겨우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지방을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하는 현재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과연 이 나라에는 수도권 있고 지방은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것이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경북은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나름대로 기업유치 실적을 올리는 듯 하였습니다. 즉, 2003년 2억달러에 불과했던 기업유치 실적이, 외자유치 실적이 지난 2004년에는 세 배가 넘는 7억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유치한 기업도 아사히글라스와 도레이 등 거대기업을 포함하여 무려 25개에 이르렀고 종업원 수도 1,370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들어온 지금에 와서는 외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앞으로 우리 경북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새로운 기업유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달 15일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가 기업도시 유치실적을 마감한 결과 경상북도 내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 내 자치단체 중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등이 기업도시로 인정받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면서 홍보하던 모습과는 달리 경상북도와 자치단체들은 정작 유치를 위한 개별기업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업도시를 유치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의 낙후성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에서는 기업도시가 신청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2006년부터는 매년 기업도시가 한 개 내지 두 개씩 추진될 예정인 바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하여 중앙정부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업종을 찾고 이를 집중 지원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며칠 전 대구·경북 등 13개 시·도지사에게 이어 시·도의회 의장단의 수도권규제완화 즉각 중단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실천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와 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도 차별성 있는 기업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등 기업유치 관련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중순경에 경상북도는 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되는 근무평정을 철저한 성과검증위주로 바꾸는 인사

혁신을 단행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재까지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에서 탈피하여 능력위주의 근무평정으로 밑바탕부터 조직개선에 들어가 점차 전 실·국으로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공직 내부혁신의 디딤돌로 삼을 방침이라 한 바 있습니다. 또 수평적 개방적 사고를 견지해 소속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근무풍토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초에는 혁신추진본부가 발족되었으며 다시 ‘도민만족과 성과중심’이라는 혁신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도정의 혁신의 주요 초점은 바로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도 아닌 공직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개량화가 어려워 모든 부분에서 성과중심의 과업을 측정하는 것이 처음부터 곤란한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성과중심조직으로 만들 것이며 어떻게 성과 측정을 할 것인지 명쾌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1년부터 80년대 후반기까지 고속성장시기의 빈곤을 탈출하는 지름길로 산아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부터는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팽배해지면서 2002년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토와 현실로 인해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서 우리 도를 비롯한 몇몇 단체는 인구가 급감하고 인구감소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 칠곡 등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매년 2~6%씩 감소되고 있고 이런 추세로 인구가 감소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감소되고 나아가 빠르게는 10년 후부터는 일부 시·군에는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첫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언 15여년 동안 바둑판형 도로건설, 복지 및 문화면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작용하였다고 보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우리 경북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19명입니다. 자녀 둘도 아니고 세 자녀인 경우에 보육비를 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및 인구이탈 방지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계적으로 적극성 있는 출산장려 및 인구이탈 방지 재원으로 공공투자 부문의 투자를 다소 감소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출산 장려 및 인구이탈 방지정책에 투자할 용의와 그리고 장기적으로 출산 장려에 관한 규정 마련도 미래 경북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강화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지역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때문에 문화재가 많음으로 인해 300만 도민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긍심도 높습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문화재가 많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화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이 문화재의 보고라고 자랑함과 동시에 문화재의 현대적인 재해석과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우리 경북은 문화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문화컨텐츠 산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컨텐츠 산업체 및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컨텐츠 시장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현재 디지털컨텐츠의 국내외 시장규모가 2002년 약 3조3,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갈수록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풍부한 전통 문화컨텐츠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경북이 문화재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관련 산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를 3D입체영상 등 첨단 디지털 자료화해서 이를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문구, 출판, 문화상품 등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학술과 산업의 연계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일제 잔재 청산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문화재관리 부분에서는 이러한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침략 시대에 제정된 문화재의 명칭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일자와 지명표기도 틀린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명칭의 전면적인 검토와 더불어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얼마 전 문화재 전문절도단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도 전국 문화재의 20%나 될 정도로 많은 경북의 문화재들이 여전히 완벽한 보호대책 없이 개인소장으로 보관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최소한 지정문화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한 공공기관에 위탁 보관하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현재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대 14만4,000여평에는 영남북합화물터미널 건립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를 조성하는 사업비 2,500억원대의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칠곡군은 이 사업을 지난 2월초에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마치고 3월경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칠곡군은 문화재지표조사 단계에서 6~8군데의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굴전문기관을 찾았지만 발굴기관을 찾지 못해 사업을 진행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서 문화재시굴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전문인력 수에 비하여 과다한 업무량이 부과되어 신속히 진행되지 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칠곡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만평 이상의 대형공사를 진행하거나 문화재분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지표조사를 거쳐 문화재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면 발굴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화재 발굴 수에 비해 발굴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전문적으로 발굴을 진행하는 전문 발굴법인도 전국을 통털어 24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기관이 없어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늦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5일 강원도 양양에서 일어난 산불은 우리에게 중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 동안에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사라진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산불 발생에 대한 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의 경우 산림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190만2,481ha의 71%인 134만7,627ha이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양양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로 산림이 훼손될 경우에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적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고찰 낙산사가 전소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북도의 사찰은 화재로부터 안전한가 하는 의문을 동시에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신문보도 등에 따르면 도내 대다수의 사찰은 소방대책이 취약한데다 사찰 건물이 목재인 점을 감안한다면 화재발생시 문화재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산불사태를 통하여 소방장비와 전문인력의 부족은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리정보시스템 GIS, 위치확인시스템 GPS, 그리고 무인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산불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산불진화용 헬기는 산림청 소유 5대를 도입해서 도소방헬기 1대, 임차용 5대 등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에서 3,000리터 이상의 소방수를 사용하는 대형헬기는 5대에 불과하여 최근의 양양산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바 향후 소방헬기의 운용 방안과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효율적인 진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임도밀도를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임도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산림사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물론이고, 산불 발생시 차단 또는 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도 개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관리와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장 임면권은 시 지역의 경우는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경상북도지사가, 군 지역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비는 시 지역의 경우는 도비, 군 지역의 경우는 군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도 시 지역은 소방서에서 하고 군 지역은 군에서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지역의 경우 재정적 지출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은 물론 군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 교육 등에 한계가 있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현재 각 군들은 열악한 군 재정난과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를 경북도로 일원화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혜련의원 ◎

○韓惠蓮議員 오늘도 묵묵히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3백만 경상북도민 여러분!

손규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한혜련의원입니다.

먼저 제19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중심사회로부터 지식정보사회로 전이함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 3백만 도민의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올 미래를 그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러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북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과연 얼마만한 지역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행정도시 건설로 수도권의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잘 구축된 고속·광역교통망이 오히려 인재와 자원을 유출시키는 통로로 활용된다면 우리 경북은 한국의 뒷동산으로 소외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를 총 결집시켜 전력투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오늘 본의원이 드리는 도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서 물론 공공기관 이전의 최종 결과는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정부가 조사해 본 결과 놀랍게도 경북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천 등의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권을 1순위로 선호하는 것이 정서상 당연하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경북이 유치를 희망한 공공기관 중에서 도로공사가 이전희망 지역 3순위를 제시한 것 외에는 경북지역으로 1순위로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론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점입가경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지역으로 이전된다는 근거 없는 낭설이 떠돌았던가 하면 여당

일각에서는 한전의 지방이전을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하자는 등의 이야기들은 공공연하게 나왔으며 더욱이 지난 21일에는 12개 시·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을 앞두고 지역별 분배에 관한 사전조율 작업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결과야 어찌 되었든 현재 참여정부의 공공기관이전을 필두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결과적으로 불균형 발전을 예정한 정치적 논리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으로서는 전국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가 모여 있고 전력사용량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최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전력의 이전은 당연히 경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한전유치의 경쟁이 과도하게 심해지자 한전배치 시·도에는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만 배치하는 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바, 이는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을 배반하고 한국전력 유치논리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경북도를 의도적으로 견제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시·도간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이 바로 27일 체결될 예정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정부 및 여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리와 다른 시·도가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경쟁 속에서 현재 집행부는 우리 경북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동시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북지역의 축산농가들은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역경의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구제역 발생, 2002년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재발, 그리고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은 축산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음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올들어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소 브루셀라가 3월말 현재 608마리로 지난 해 한해 전체 811마리에 육박, 가축질병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상에 잡히지 않은 채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는 시·군 자체에서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감염된 소는 경북 전역에 수천마리에 이를 것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동물 전염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든 가축이든 안전한 것도 없고 무사히 지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축산업에서 가축의 질병은 단순히 어떤 재난 정도가 아니라 치유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나라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질병의 전파성 가능성이 커지고 항생제 과다사용 등으로 내성균이 증가한데다 유전자 변이 등이 겹치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의 신종질병이 축산농가를 앞으로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자세를 새로이 하고 발병하면 뒤처리나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미연에 사전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해결책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지난 1998년10월21일 경상북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쇄된 바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는 가축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 재설치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폐쇄 전의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는 1992년10월21일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현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입구에 개소하였으며 남부지역의 축산농가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폐쇄된 이후 남부지역의 6,000여 축산농가가 축산행정서비스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가축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칠곡까지 가서 질병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초기대응이 늦어지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천의 경우 경북 도내에서 최고의 돼지사육 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천가구에 서 한우와 닭 등 각종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 집단사육 지역임에도 방역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기관이 하나 없는 실정이어서 전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방역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해 영천시와 경북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경북대 수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영천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경북대 수의과대학 이전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경북대는 영천시의 유치활동에 공동노력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영천은 지역축산발전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가축시험의 새로운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평소의 빈틈없는 예찰과 적절한 예방조치가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때 가까운 곳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며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현장중심으로 지역별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업이 살 길은 이제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농장 청정화를 이루고 가축질병 청정국으로 되어야만 하며 그 다음은 고급육 생산입니다. 지역의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4분기 동안 경북지역을 찾은 외지관광객 수가 모두 951만명으로 이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의 776만6,000명보다 무려 24% 증가한 수치로 당초 경북이 목표로 하였던 관광객 6,000만명의 유치가 무난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의 증가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포항시·울진군 등 동해안 지역의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이 중요한 원인이며 이는 곧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개통에 힘입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광자원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흡인력으로 인해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 경북에 들른 관광객을 계속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안일대의 관광객이 늘어난 반면 세

계적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경주의 관광객은 오히려 줄어들어 지난 해 대비 28% 68만 명이 감소하여 관광산업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곧 그동안 우리 경북의 관광은 기존의 관광자원에만 의존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을 등한시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중대한 사실은 관광객들을 위한 도로교통망의 불비에서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난해 12월7일 68.4km의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국내최대내륙공단인 구미공단의 첨단전자산업과 대구섬유산업 수출 물동량의 배후항 및 교육거점항으로 영일 신행만이 중점 육성되면서 환태평양 경제권 전진기지로 경북지역이 자리매김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역경제의 명암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포항을 비롯한 영덕과 강구,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은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지역경제가 비교적 활력을 띠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천 및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에 이르는 기존 28번 국도변 상권은 완전히 빈사상태로 변하고 있으며 영천은 아예 도시공동화현상을 빚고 있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포항공단에서 경주시 건천읍에 이르는 제2산업도로로 개통되면서 경주시 강동면에서 경부고속도로로 경주 나들목 7번 국도변 상권도 날로 쇠퇴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 전제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삼매터널 부근에 이미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개설해놓은 도로를 이용하여 간이 인터체인지를 설치한다면 자연스럽게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동시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이후 상대적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영천과 경주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더욱이 영천댐 상류지역은 대규모 자연생태공원과 황강리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미술창작 스튜디오 및 스튜디오박물관, 정각리 별빛마을 등이 조성되고 임고서원, 보현산천문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세계적 관광지인 경주지역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영천댐을 끼고 돌아가는 도로는 이미 경주 코오롱마라톤대회의 연습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등 천혜적 조건이 뛰어나 경주지역과 관광의 연계가 있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전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진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지난 4월22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은 결과적으로 전국 최대의 원자력발전 집약지가 되었습니다. 울진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6기, 월성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4기 등으로 모두 10기가 가동 중으로 국내 20기 중 5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09년과 2010년에 각기 신월성 원전 1,2호기가 완공되면 경북에 소재한 원전은 모두 12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욱이 경북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유치를 희망한 상태로 만약 유치가 성사된다면 원전과 방폐장을 동시에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경북지역에 집중되면서 표면적으로야 지역의 발전의 계기를 가져온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원전이 가지고 있는 각종 사고의 가능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방폐장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폐장을 비롯한 원전시설이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별다른 저항없이 설립되고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정부의 지원금보다는 사전에 지역민들의 사회적 합의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일부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해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지진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지진발생에 대비해 종합적인 피해예방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기존에 설치된 핵발전소의 내진설계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국산 과일 수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쌀 수입 협상과정에서 쌀의 시장보호를 위해 중국산 사과와 배 수입을 검토하기로 부가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경 중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이 시작되면 9만 가구에 이르는 국내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농림부가 쌀 협상과정에서 이면 계약은 절대 없었다고 강변한지 며칠 만에 결국 부가적인 조치를 양보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의 농정에 대한 불신만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들은 정부가 119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한 농업·농촌회생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곧 시작될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경북의 과수농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사과를 수입할 때 예상되는 도매가격은 kg당 평균 910원으로 국산 사과 평균 도매가격 2,788원의 32.6%에 불과하고 중국산 배의 평균 도매가격은 761원으로 국산 배 1,856원의 41%선에 지나지 않아 그야말로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10년경에는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어 일본산 고급사과와 배도 대거 수입될 전망이라고 하니 한국의 과수농가는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할 지도 모르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에 특히 국내 과수 1위인 경북지역에서는 과수농가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사과는 국내생산량의 64%, 복숭아는 46%, 포도는 43% 등으로 1위이며, 배는 16%로 4위의 생산규모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FTA 체결의 피해도 전

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때에도 사과와 배는 우리나라 과수업의 주요품목이기 때문에 제외시켰던 것인데 지금 와서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산 사과와 배가 수입될 경우 국내과수 농가들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과수농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도 농가들의 신청이 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근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810농가가 247ha의 과원정비를 신청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영천 137농가 34ha, 의성은 99농가 31ha, 상주 140농가 30ha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역울한 경우는 정부의 FTA기금 지원과 자부담으로 고목을 캐내고 수목 갱신을 한 과수농들입니다. 즉, 농민들이 5년 앞을 내다보면서 키 낮은 사과 등으로의 수목갱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산 사과와 배 수입절차를 간소화 해준다는 것은 날벼락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중국산 사과와 배가 우리의 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영천지역은 1만여 농가에서 6,022ha의 과수를 재배,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과일을 생산하는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소득 비중 48%를 차지하고 있는 포도와 사과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불황과 한·칠레 무역협정 통과 등으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타 소득작목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작목 경작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작목 선별에서부터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의 명쾌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韓惠蓮議員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이의근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몇몇 부분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축질병에 대해서 대응자세와 발병했던 뒤처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전에 방지를 하고 예방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전담부서를 설치할 하라고 그리고 전문인력을 늘여야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농정국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하시고 가축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韓惠蓮議員 사실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 문제가 되고 경상북도에서는 아예 4월1일부터 새로운 전담부서를 산림보호사업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우리 축산농가는 물론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가축질병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등한시 하는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韓惠蓮議員 우리 본소가 칠곡 아파트 단지 부근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아파

트 단지에 본소가 이전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바와 같이 영천, 경산, 청도 등으로 남부지역에 가축 두육수는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 등 현안 문제는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사실들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가져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소이전 또는 지소를 신설지역으로 남부권 지역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 의향은 어떤지요.

○韓惠蓮議員 남부지역 생산자 6,000여 양축농가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조속히 남부지소가 부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FAT협정 발효 후에 기금의 지원과 자부담으로 과수원 폐원을 신청해 놓고 농가의 경우에는 폐원 보상금으로 10HA 이르는 시설포도는 1,031만5,000원을 받고 복숭아는 344만7,000원으로 폐원 보상과 관련하여 농림부에서는 233억6,800만원 예산으로 희망농가 대상으로 우선 지원키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폐원 보상금은 지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韓惠蓮議員 폐원 신청은 물론 2008년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까?

○韓惠蓮議員 그러나 2004년도에 신청한 폐원보상금이 아직도 안 나오는 폐원을 신청한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韓惠蓮議員 그리고 폐원을 신청한 면적을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복숭아 재배농가의 폐업신청 결과를 보면 청도지역은 복숭아 과수원 면적의 48.1%가 폐원신청을 하였으며, 경산도 전체 면적에 37%나 되는 633HA의 폐원 신청을 하였고, 영천은 전체 38%인 759HA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원을 신청한 농민들의 손에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심고 가꾸어야 하는데 지금 폐원을 하고 난 뒤에 재배작물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경쟁력 문제도 그렇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작목을 지도할 그런 처지도 못되고 폐원에 따른 대책이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경상북도에 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찬식의원 ◎

○張瓚植議員 영주시 출신 기획과학위원회 소속 장찬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규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제19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도민의 복지와 전인교육을 위해 늘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2004 경북의 사회지표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경북의 사회지표를 보자면 우리 경북이 과연 옹도 경북으로서 그 면모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은 이미 들어본지 오래이며 농업쓰레기 등으로 수질은 물론 자연 생태환경도 전반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로 생기가 없어진 지 오래이며 또한 문화와 교육환경의 열악함과 소외현상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도로와 공단의 개발 등으로 수백년 전통을 자랑하는 마을의 변형과 파괴가 너무 잦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역시 농촌 환경의 피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통적으로 농도이었습니다. 첨단 산업의 육성 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북의 농촌을 진정으로 살리지 않고서 지역발전을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소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 농촌가구의 평균소득은 연간 2,900만1,000원입니다. 경상북도는 9개 도 중에서 6위로 2,699만2,000원으로 인구에 비하여 낮은 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04년 한해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이 3,736만344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80%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해 경북지역의 농외소득은 646만8,000원으로 제주도와 경기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북이 전통의 농도인 점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의 소득으로 끌어올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본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농가소득의 제고를 위해 쌀농사에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작물을 키워보자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경기도의 강화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벼농사 대신에 연꽃을 재배하는 것이 좋은 사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꽃을 재배함으로써 유기농 연근을 비롯해 연잎 차, 연근 막걸리 등과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농촌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지만 본의원은 연꽃을 대량으로 재배함으로써 동시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관농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산과 호수, 바다, 그리고 들녘마다 장관을 이루고 있는 농작물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근간으로서 경북도정에 있어서 결코 가버이 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러한 이유로 우리 의회 내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본회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문제가 최근에 와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의 유통환경은 급변하여 대형할인점이나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유통시장으로 재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는 재래시장은 새로운 유통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채 재래시장의 상권은 공동화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정책이 대부분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을 짓는 등의 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 정도에만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사업효과의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경북의 경우 올해 23개의 시장에 19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현대화 된다고 하여 여전히 대형할인점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으며 경기불황까지 겹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같은 노력이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는 대형할인점들과의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재래시장의 결만 바꾼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가제나 통일된 마케팅 정책, 그리고 온라인마케팅 등 재래시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래시장 구조를 판매상품의 집산화 및 전문화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농수산 특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농민에게는 생산

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를 판매하는 상인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민에게는 생산의욕을 상인에게는 판매의욕을 고취하여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농어민, 상인,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삼위일체가 됨으로써 재배재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진흥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구의지를 보이는 재배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재정적 지원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장활성화를 꾀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며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부르고 노인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경북은 이미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한 의성, 군위, 봉화 등의 지역에는 노인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급증을 이대로 방치해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은 물론 경북의 농촌에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없이 노쇠하고 폐쇄된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젊은층의 이농과 핵가족의 보편화로 도시와 떨어진 농촌마을은 60~70대 이상의 노인부부 단독가구나 노인독신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농촌노인들은 도외지에서 돈벌이를 하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적인 복지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대부분 노인들만 남게 된 농촌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농촌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실태현황조사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 군소재지나 면소재지 등에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와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증 노인을 위해 정부는 현재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북지역 중에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은 모두 영덕, 청송, 영양, 군위, 의성, 예천, 청도, 봉화 등인데 이들 지역에서 무료요양원이 있는 곳은 의성, 예천, 청도, 봉화 네 군데 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북지역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2차 현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소 4곳 중 1곳은 진료의사 숫자가 최소 배치기준에도 못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곳 중 2곳은 간호사 수가 기준을 밑돌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지원을 외면, 서민의 건강이 위협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요양기관 변동추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 당 인구수가 1,399명으로서 전남지역에 이어 인구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에서도 경북도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소가 포항에 몰려 있는 상태이며 반면, 상주, 문경, 예천 등 북서부 진료권에는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어 주민의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 등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수준 있는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북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형상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쌀 협상이 타결되어 쌀 시장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향후 10년 이내 수입쌀의 규모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고 당장 6월부터는 동네 슈퍼나 가게에서 외국산 쌀이 시판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의 쌀 농업을 살리는 것이 이제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가장 절박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 온 것은 적절한 농정정책으로 좋은 쌀을 생산하고 생산비를 갖추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쌀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여년 세월동안 농어촌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02조원을 투입하는 등 농업 살리기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안과 정책들이 어떻게 쌀의 경쟁력을 높여 왔는지는 모르나 직접 현장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농업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결국 품질의 고급화로 우리 쌀 농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뿐 아니라 도정, 건조, 저장 등 수확 후 처리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만큼 농협 RPC는 우리나라 쌀농업 전반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협 RPC는 건조 저장능력이 아직 미흡한 데다 가공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

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RPC 시설의 선진화와 건조·저장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농민의 소리를 귀기울여보면 쌀 경쟁력강화에 당장 필요한 것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한 영농교육과 보급, 벼건조 저장시설인 싸이로의 증설, 전체 쌀 눈 가운데 80% 이상이 살아있는 완전미를 만드는데 필요한 등급선별기와 색채선별기 등의 확대보급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미질수준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쌀의 고품질 유지를 위해 수확 후 가공처리분야의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시설들을 확대 보급하거나 증설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문제만큼은 생산자인 농업인,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농협 그리고 행정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섯째, 다음 질문은 앞 질문과 관련하여 급식관련조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2004년 4월1일 제2813호로 공포된 경상북도학교급식재료사용및 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2003년 9월 수정안 발의와 재의요구 등의 산고를 거쳐 우리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로 우리 경북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44만여 동량지재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미래의 투자라는 취지에서 동 조례를 발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로부터 1년여를 지났지만 경북도는 이와 관련된 규칙 제정은 물론이고 사업비는 한 푼도 계상치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의 경우 2005년도에는 총사업비 178억원중 도비 54억원, 시·군비 124억원의 집행계획을 확정하여 학생들의 식단에 지역우수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도내의 시·군만 보더라도 2004년말에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된 안동시, 상주시 각각 1억5,000만원, 영양군 1억8,000만원, 고령군 2억8,900만원, 울진군 2억6,200만원의 시·군비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경북도보다 늦게 제정되면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 먼저 사업비를 계상하여 지역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구미시 등 여타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발의 등을 통해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학생 10명중 9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의 식사를 ‘집밥’이 아닌 ‘학교밥’으로 대신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저질 식재료 사용→부실식단→식중독 사고 발생” 등의 악순환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청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섰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건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예산을 투자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수입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 확인과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확인이 용이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도로와 다리 건설도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보다 더 높은 투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학교급식 식단으로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농산물의 입맛도 잊어버리고 외국산 농산물에 입맛을 들이는 아이들로 바뀔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첫째, 지자체와 국가가 의지를 갖고 분담한다면 국가재정상 우리 농산물에 의한 급식의 실현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다른 도의 경우를 벤치마킹하고.

셋째, 우리 도내 시·군중 현재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시·군만이라도 조례에서 규정된 도비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올해 안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임무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가 분명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영주지역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지역의 중·고등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11개교에 4,360명, 고등학생이 10개교에 4,770명으로 총21개교에 9,100여명의 학생이 있으며, 주민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력 향상에 힘쓴 결과 외부학생의 유입 등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수가 많은 모범적인 농촌교육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높아 영주과학교사 모임 등 교사연구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영주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으로 아트타운과 발명공작교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창의성 교육과 영재교육이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적·물적 자원을 절감하는 등 교육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성과에 비하여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한 특성화 고등학교나 영재성을 키워주기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1개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로 교육으로 인재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특히

기초과학과 기술력을 키워야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국민 1인당 GNP 1만불 이상의 나라로 살 수 있는 것도 과학기술력 양성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정보, 통신기술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과 기술력 배양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근간에 언론에서 경북과 학교등학교 이전과 경산에 첨단과학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보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경북과학고등학교의 이전 계획과 경산에 첨단과학고등학교 신설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지역은 포항이나 경산에 비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과 경북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북북부지역의 교육도시인 영주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정기의원 ◎

○金正基議員 김정기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규삼 부의장님,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기다려주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답변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역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앞서 한혜련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싶어서 그 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金正基議員 지금 우리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면서 “한전, 한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사실 한전보다 더 큰 것 우리 경상북도청이 경상북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어느 공기업 이전보다도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못하면서 지금 공기업 탐만 자꾸 낸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두 각성하고 한번 추진해 봅시다. 힘을 합쳐서.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과 도청이전에 관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지사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도 통합이나 도청이전은 시기론과 이전적지 문제로 지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자치구역의 광역화내지 자치계층의 단층화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단지 방안을 모색한다는 정책초기단계로 보도는 되고 있지만 본의원과 다수 의원들이 제기한 시·도 통합과 도청이전 문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의회는 답이 없는 질문만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자치구역 개편에 대해 지사님은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고 시기론을 주장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관련부처에서 많은 정책적 연구가 수반되었고 관련 시·도와 정보교류 내지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추측이 됩니다.

또한 대구시장의 사라질 경북이라는 발언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미 오래전에 행정계층개편론이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공히 도 폐지와 시·군·구 통·폐합을 주장하고 단지 개편 시기에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개편론이 현실화 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개편론이 수면위로 부상하자마자 자치경찰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고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현안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도의 최대 당면과제인 시·도 통합과 도청이전문제 또한 재론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자치행정계층의 축소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방분권의 실현이며 또한 여야가 합의한 방안대로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없어지고 전국을 수십 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분할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국 힘이 약해지고 중앙집권화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정원증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8년 이후 공무원의 정원을 현저히 감축하여 작은 정부를 지양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3년 5월에 공무원표준정원제 실시 이후 공무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5월현재 현원이 소방직 포함해서 도공무원 수가 3,879명이고 이는 지난 2003년보다 300여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이는 경북도의 표준정원에 100여명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영국 국부론의 아담스미스 이래 신자유주의를 거쳐 오늘 날의 세계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현상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이 정해진다고 해도 이렇게 대책없이 증원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부가 2007년 총액인건비제를 전격 시행하기 위해 관계법령개정을 마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표준정원제로는 탄력적이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정부의 의지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행정구조상 일단의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새로운 제도의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경상북도의 인구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체계와 행정전산화로 행정업무의 양적인 측면도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갖가지 명분으로 공무원의 수만 점증시켜 나가는 것은 실업자 구제와 또 도민의 복지정책이나 경제개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등 도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할 재원이 엉뚱하게 내부 경직성 경비로 소용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정원조정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지사 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레임덕(Lame Duck)현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청은 물론 도산하 연구소와 사업소를 포함 비효율적이고 운영이 원만하지 않은 곳은 통·폐합과 같은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준비하여 제출한 이후에 지난 24일자 주간조선에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심충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본의원의 발언취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줄 압니다.

그리고 2001년 지금의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든다고 도내 김천에 2개 읍·면, 경주에 1개 면을 시범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산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였다가 성과 없이 다시 기존의 읍·면 행정으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정책실패의 원인과 후속조치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노선버스 운수사업자와 교통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에서 매년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5개 시외버스 업체에 국·도비를 포함 104억2,800만원, 시·군별 시내 농어촌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165억4,000만원입니다. 유류사용량과 차량대수, 실차조사를 통해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도에서는 시외·시내버스의 손실보전금과 적자노선 등 명목상 각종 재정 지원을 버스업계에 매년 증액하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버스요금도 꾸준히 인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지원 형태는 버스업계의 노선 재조정이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빈약하고 의례적으로 재정만 지원하는 한편 지역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용역업체의 조사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로 버스 노선과 요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개량 등 도로여건이 향상되어도 요금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되고 이런 문제를 즉각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어야 겨우 시정토록 하는

업자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일례로 다른 지역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본의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김천에서 국도 4호선으로 구미공단까지 가는 시내버스의 노선 개설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대구에서 김천을 경유하는 시외 직행 버스는 면소재지에 정차하지 않고 김천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칠곡의 경우에는 짧은 거리에 세 곳, 인근 상주는 네 곳을 정차하면서 김천에는 도심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단 한 곳만 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차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관계당국은 버스업자들의 입장만 대변하였지 주민들의 권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따져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위에서 지적한 민원만이라도 7월말까지는 시정명령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져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선 시내버스가 높고 운행 횟수도 줄지 않는데 그동안 시외버스는 운행횟수를 줄이고 보조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비율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버스사업보조금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각 업체에 배정되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버스 인가 문제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실 이 공항버스는 구미공단이나 경주관광지 같은데서 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바이오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 버스 운송업체들이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업체에 인가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실업체를 양산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업체를 두고 신규업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려다 못한 것으로 하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매년 때가 되면 재정만 지원하는 관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버스업계의 구조를 개혁하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도내 시·군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을 좀더 과감히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경북도내 시·군은 고령화 혹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04년 말 현재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12.9%를 나타내고 있고 점차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가 행

정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며 일선 시·군은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시골마을에 경쟁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건립했습니다. 신축에만 신경을 쓰고 관리와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지 못해서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의 사정이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난방비 부담은 거의 배로 증가했습니다. 시·군의 예산 지원과 집행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주민들의 수와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항상 주민들이 형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단체들은 눈에 보이는 전시성 행정에 예산을 집중하고 주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복지 분야에는 인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을 위한 우선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가장 근접해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실 접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자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적 검토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도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중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크게 연장된 것은 인류의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병장수의 축복이 사회적 문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고령화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 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노인일자리 찾아주기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나치게 과거 취로사업식 일회성에 집중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크게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의 세 가지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불법스티커와 쓰레기 등의 환경정비 계도 활동 등을 의미하는 공공참여형은 나머지 사회참여형이나 시장참여형보다 더 많이 개발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이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임금살포식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나친 공공참여형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그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더욱이 정부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도 중단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사회참여형이나 시장참여형을 보다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취업알선과 취업상담, 취업장려금 지급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비정규학교 관리와 지원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비정규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학교에 기금과 도비, 시비를 합쳐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시·군별로 학교의 규모와 운영 형태가 모두 다르고 교육의 내용도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의 배정기준은 무엇이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비정규학교는 대부분 평생교육의 형태로 야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의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국 청소년체육과이고 일선의 시·군에서는 새마을체육과 청소년담당 혹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이것은 사회개발인지 아니면 복지인지, 교육인지 구분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비정규학교의 학생편성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검정고시반과 한글교육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지원이 청소년에 국한되어 일반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청소년 관련 담당업무로 한정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업무분담을 구조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약 20% 정도가 한글을 읽고 쓰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사람들을 정부는 일정 시설을 갖추고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시설까지 갖추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비정규학교를 교육당국에서는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적으로나 재정지원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민간교육시설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인가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업무영역의 범위와 예산 중복지원의 불가를 앞세워 외면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비정규학교는 재정이 열악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시기를 놓쳐 만학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질을 성숙시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제도의 개선과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고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지원 전담기구를 두어 예산의 배분 등을 협의하여 사실상 방치된 비정규학교를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첫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질문 이것은 원고를 속기록에 등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正基議員 먼저 늦은 시간에 길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답변 중에 구미~김천 간 시내버스 노선 말입니다. 그것을 국도 4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도 4호선에 따라서 김천에서 왜관까지 가고, 구미에서 왜관까지 가는데, 국도 4호선을 통해서 왜관까지 가는 것을 구미로 보내주든지 하여튼 김천에서 국도 4호선 따라서 갈 수 있는 그걸 하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만약에 구미 아포로 해서 가는 것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큰 일 납니다. 본의원

은 혼납니다, 아포 주민들이나 그쪽 주민들한테...

○金正基議員 아마 앞으로 인사행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원이 가축방역, 기업투자, 장애인, 노인복지 등 신규 행정 발생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신규행정 발생에 따른 인력이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金正基議員 김대중 정부 때 예산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청와대에서 시켜가지고 시범하고, 그 후에 확대를 안 해야 되는데...

○金正基議員 행정의 맹점이 그겁니다. 시작하면 중단을 못합니다. 정리가 안 돼요. 그 현장을 가 보면 이전의 면사무소 형태로, 읍사무소 형태로 다 바뀌었습니다. 인력이든 사무든 이관됐던 것이 다시 원상 유턴해 버렸습니다.

○金正基議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의원이 끝에 질문한 비정규학교 말입니다. 이게 사람 숫자만 도내 한 500여명 된다고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 노력하는 것, 참 큰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도 크고 한데, 이게 청소년기본법 제49조2와 평생교육법 20조 및 시행령 9조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각각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생교육을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가 손발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인근 지역의 농촌에서는 자기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아이들 주민등록 위장전입해서 멀리 도시학교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거 주민등록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등록법 위반된 것 있으면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적인 문제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손발이 안 맞아서 농촌학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교육청하고 도하고 좀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농촌학교 빈 학교도 좀 덜 생길 것이고, 폐교도 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비인가 학교, 이것도 지금 성인들이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과정 야학하는 것하고 같이 합니다, 반을 달리해서.

이런 것도 본의원이 질문했듯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하나의 사회교육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서로 “이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한다”, “우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한다”... 이러니까,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효과가 없고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사님,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십시오.

VIII. 5분 자유발언

□ 2005년 6월 9일(목) 제2차 본회의

◎ 박종욱의원 ◎

○朴鍾郁議員 평소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1952년도에 시행된 이래 1961년도에 중지되었다가 1991년도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91년도에 통과가 되었을 때 정당 간에 알력으로 정말로 기초와 광역이 아주 어정쩡한 지방자치법이 되었습니다. 또 위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이후에 2005년 1월27일까지 열 네번의 법률개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자당, 평민당, 민한당 등 3당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지방자치제는 기형아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도 권한이 포괄적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제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상위법과 행자부의 지침 등 많은 문제가 되면서 자율권을 상실했습니다. 작금에 또 다시 여론화 되어 있는 의원 유급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봉급이 자기의 직위를 말합니다. 급료가 당사자의 신분과 직급을 평함에 있어서 의원의 활동범위와 예우는 물론 집행부와 관계가 묘하게 되어 갑니다. 의원의 활발한 의정을 위해서 유급제 대신에 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의정활동비를 올리고 수당을 올리면서 하나 있던 보좌관을 둘로 만들고 비서관을 하나 늘이고 하면서도 매년 광역의회만은 제동을 걸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꼭 지방선거가 있는 그 전 한해 매년 지방의원 유급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도 2002년 선거를 앞두고 유급제 논의가 무산되었습니다. 한층 불이 붙다가 그 당시에는 부이사관 대우이니, 무슨 대우이니 하면서 상당히 띄워놓고 공천권을 갖고 제약을 했습니다. 하기가 우리 도의회는 3명 이외는 거의 다 공천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하고 있는 유급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와 있느냐 하면 4급 22봉입니다. 4급 22호봉의 봉급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4급 22봉입니다. 여기에 맞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에다 국회의원의 지방보좌관을 하나 놔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논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우리 의회가 이때까지 바라는 유급제가 이런 것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현재 수당을 배로 인상하더라도

우리가 몇몇이 1급에서 9급까지 무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유급보다는 수당제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도 다시 한 번 전국의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조례안 : 10건】

-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6.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보상금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3조(신고기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의한 징계시효(징계卜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도(감사부서)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본문의 방법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도(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도(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도(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신고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도(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

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상금의 결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보상금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조리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조리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보상금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부과 및 회수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6. 금품이나 향응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던 사항
7. 신고내용 외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
8.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된 사항
9.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액
1	제2조제1호 관련	·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
2	제2조제2호 관련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3	제2조제3호 관련	·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최고 1천만원 이내)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별지서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전화번호	
피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고내용				
증빙서류				
비고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신고기간)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 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해당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의한 징계시효 만료일 3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기간)----- ----- -----징계시효(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④ <신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④(원안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결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table> <tr> <th>유형 (지급대상)</th><th>지급액</th></tr> <tr> <td>제2조제1호 관련</td><td> -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3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 </td></tr> <tr> <td>제2조제2호 관련</td><td>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3백만원 이내) </td></tr> <tr> <td>제2조제3호 관련</td><td>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td></tr> </table>	유형 (지급대상)	지급액	제2조제1호 관련	-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3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	제2조제2호 관련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3백만원 이내)	제2조제3호 관련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제8조(보상금의 결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table> <tr> <th>유형 (지급대상)</th><th>지급액</th></tr> <tr> <td>제2조제1호 관련</td><td> - 금품 수수액의 3배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3배이내 (") </td></tr> <tr> <td>제2조제2호 관련</td><td>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금품액의 3배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td></tr> <tr> <td>제2조제3호 관련</td><td>(원안과 같음)</td></tr> </table>	유형 (지급대상)	지급액	제2조제1호 관련	- 금품 수수액의 3배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3배이내 (")	제2조제2호 관련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금품액의 3배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제2조제3호 관련	(원안과 같음)
유형 (지급대상)	지급액																
제2조제1호 관련	-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3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																
제2조제2호 관련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3백만원 이내)																
제2조제3호 관련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유형 (지급대상)	지급액																
제2조제1호 관련	- 금품 수수액의 3배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3배이내 (")																
제2조제2호 관련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금품액의 3배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제2조제3호 관련	(원안과 같음)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6.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안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리 소재 독도에 대하여 일본국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가 기본재산 등으로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제3조(독도의 달) ‘독도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독도의 달’에는 공무상 일본국 방문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국제적인 행사 참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독도 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시마네현 및 시마네현의회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다.

제5조(행사 등) ①‘독도의 달’에는 도민의 단결과 독도 침탈 시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독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독도의 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를 일본국 고이즈미 정부의 묵인하에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일본어로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분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하여 일본국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다만,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제2조(적용범위).....다만, 상법의 적용을 받는 <u>영리</u>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제4조(준수사항)①제2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독도의 달’에는 일본국 방문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국제적인 행사 참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준수사항)① <u>도지사</u> 는 제2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독도의 달’에는 <u>공무상</u> 일본국 방문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국제적인 행사 참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독도 영토 침탈을 명문화한 시마네현 및 시마네현의회가 ‘독도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다.	②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독도 영토 <u>침탈시도</u> 를 명문화한 시마네현 및 시마네현의회가 <u>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u> 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다.
제5조①“독도의 달’에는 도민의 단결과 독도침탈 행위를 분쇄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①“독도의 달’에는 도민의 단결과 독도침탈 <u>시도</u> 행위에 <u>대응</u> 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6.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883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21명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925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93명

제3조(정원 책정기준) ①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

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 중 75명(혁신분권담당관실 운영인력 14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재정과 복식부기 운영인력 4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운영인력 14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운영인력 17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조경사업추진인력 4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인력 22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별표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정무직
도	78%이상	20%이내	2%이내

비고 : 일반직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도	6%이내	20%이내	33%이내	34%이내	7%이상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도	15%이내	85%이상	26%이내	74%이상

3. 기능직공무원

구 분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도	4%이내	9%이내	15%이내	32%이내	40%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9 급
도	15%이내	14%이내	40%이내	23%이내	8%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5.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 방 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도	1%이내	2%이내	4%이내	7%이내	15%이내	33%이내	38%이상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3,883	1,118	93	2,285	387
정 무 직			1	1			
일 반 직	소 계		1,294	920	55	75	244
	2~3급		1		1		
	3 급		7	6		1	
	4 급		62	41	7	5	9
	5 급		242	193	8	17	24
	6 급		442	317	18	27	80
	7 급		463	327	20	22	94
	8 급		77	36	1	3	37
별 정 직	소 계		33	22	5	5	1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4	4			
	6급상당		13	7	2	4	
	7급상당		7	6		1	
	8급상당		4	2	1		1
연 구 직	소 계		196	2		161	33
	연구관		28	1		26	1
	연구사		168	1		135	32
지 도 직	소 계		28			25	3
	지도관		7			6	1
	지도사		21			19	2
소 방 직	소 계		1,925	47		1,878	
	소방정		16	2		14	
	소방령		27	9		18	
	소방경		60	6		54	
	소방위		125	10		115	
	소방장		259	10		249	
	소방교		544	9		535	
	소방사		894	1		893	
기 능 직	소 계		362	126	33	97	106
	6 급		11	5	1	3	2
	7 급		32	18	3	5	6
	8 급		56	12	6	17	21
	9 급		117	36	4	37	40
	1 0 급		146	55	19	35	37
교 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1			11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6.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환경산림수산분야 환경관리과 건명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환 경 관리과	33.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업무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의3,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 에관한조례제10조 동법제36조의3, 동조례제10조 동법제36조의3, 동조례제10조	시 장 군 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1】

환경산림수산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신설)		환경 관리과	33.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업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경상북도 자동차공회전제한 에 관한 조례 제10조 동법 제36조의3, 동조례 제10조 동법 제36조의3, 동조례 제10조	시장 군수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6.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2조중 “주요사항을 심의”를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보건복지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 지역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자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제1호중 “사회복지”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제2조(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u>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u>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 <u>중요사항</u> 및 <u>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u>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할 수 있는 기능 확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구성수를 축소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이 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보건복지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참여 폭을 확대함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2.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 지역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자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주요사항의 연구 조정 2. ~ 5. (생략)	제4조(기능) ----- -----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 ----- 2. ~ 5. (현행과 같음)	보건의료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함.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

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6.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수상대상자 선정은 부문별로 심사위원의 실적평가와 심사위원 조정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후보자를 선정한다. 단, 최고점수를 얻은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실적평가점수가 많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적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각 부문별 위원들의 다수결로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7조(수상자 심사결정) ①(생략) ②수상후보자 선정은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수상자 심사결정) ①(현행과 같음) ②수상대상자 선정은 부문별로 심사위원의 실적평가와 심사위원 조정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후보자를 선정한다. 단, 최고점수를 얻은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실적 평가점수가 많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적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각 부문 별 위원의 다수결로 선정한다.	수상자 선정 방식을 다수결 에서 최고 득점제로 변경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 을 가진다.	<삭제>	최고득점제로 변경됨에 따라 가 부 동 수 일 경우의 위원장 결정권 조항을 삭제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경상북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6.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6.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동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e-러닝학습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18.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재난·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u>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u>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 ----- 「 <u>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u> 」----- ----- ----- ----- -----.
제 3 장 직속기관	제 3 장 직속기관
제11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16. (생략) <신설> <신설>	제11조(업무) ----- -----. 1. ~ 16. (현행과 같음) 17. <u>e-러닝학습지원체제에 관한 사항</u> 18. <u>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재난·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17. (생략)	19. (현행 제17호와 같음)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6.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 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등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본문 및 제1호중 “사용수수료”를 각각 “사용료”로 하고, 동
조제2항중 “복사”를 “복사 및 출력”으로 하며, “복사료”를 “사용료”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복사기

가. A4(210×297) : 1매 40원

나. B4(257×364) : 1매 40원

2. 일반프린터

가. A4(210×297) : 1매 50원

나. B4(257×364) : 1매 80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용료) 독립도서관의 시설사용료와 자료 복사 및 출력료 징수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중 “시설사용수수료 및”을 “시설사용료와”로 하고, “복사료”를 “복사 및 출력료”로 하며,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u> 제 2 장 직속기관 제 3 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제10조(사용료) ① 교육정보센터 시설이 용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u>사용수 수료</u>를 징수할 수 있다. 1. 회의실 등 <u>사용수수료</u> : 1일 20,000원 ② 교육정보센터의 자료를 <u>복사</u>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u>복사료</u>를 징수할 수 있다. 1. 16절, 18절 단면 : 1매 20원 2. 8절, 9절 단면 : 1매 40원 제 6 절 경상북도립도서관 제15조(사용료) ① <u>도립도서관의 시설이 용</u>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u>사용수수 료</u>를 징수할 수 있다.	<u>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u> 제 2 장 직속기관 제 3 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제10조(사용료) ① ----- <u>사용료</u> -----. 1. ----- <u>사용료</u> : ----- ② ----- <u>복사 및 출력</u> ----- <u>사용료</u> -----. 1. <u>일반복사기</u> 가. A4(210×297) : 1매 40원 나. B4(257×364) : 1매 40원 2. <u>일반프린터</u> 가. A4(210×297) : 1매 50원 나. B4(257×364) : 1매 80원 제 6 절 경상북도립도서관 제15조(사용료) <u>도립도서관의 시설사용료</u>와 자료 복사 및 출력료 징수는 제10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1. 회의실등 사용수수료 : 1일 20,000원 ②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복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16절, 18절 단면 : 1매 20원 2. 8절, 9절단면 : 1매 40원 제 3 장 지역교육청소속기관 제18조(공공도서관 사용료) 지역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의 <u>시설사용수수료</u> 및 자료 <u>복사료</u> 징수는 <u>제13조</u>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장 지역교육청소속기관 제18조(공공도서관 사용료) ----- ----- <u>시설사용료와</u> -- -- <u>복사 및 출력료</u> ----- <u>제10조</u>-----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6.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의 초등교육과의 건명란에 제5호를, 중등교육과의 건명란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등교육과	5. 공립초등학교 교감의 인사기록카드 관리	교 육 장
중등교육과	6. 학생야영장의 운영지도·감독	교 육 장

별표의 평생교육체육과의 건명란중 제6호란을 삭제하고, 제7호·제8호를 각각 제6호·제7호로 한다.

별표의 기획예산과의 건명란 제2호중 “중학교육성회”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별표의 재무관리과의 건명란중 제1호란을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무관리과	2. 교육청 및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교 육 장
-------	---	-------

별표의 재무관리과란 다음에 교육시설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시설과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도시계획(학교) 시설 결정 신청	교 육 장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 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u> 제2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 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 “교 육장”이라 한다)·기타교육기관장· 각급학교장·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 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 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u> 」 ----- ----- ----- ----- ----- ----- ----- ----- ----- ----- -----.
제2조 ~ 제4조 (생략)	제2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 임받은 권한을 행함에 있어서는 <u>사 무관리규정</u>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명의표시) ----- 「 <u>사 무관리규정</u> 」 ----- -----.
제6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교육기관 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u>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u> [별표]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장·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장·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수임기관	소관별	건 명	수임기관
초등교육과	1. ~ 4. (생략) <u><신 설></u>	교 육 장	초등교육과	1.~4. (현행과 같음) <u>5. 공립초등학교 교감의 인사기록카드 관리</u>	교 육 장
중등교육과	1.~5. (생략) <u><신 설></u>		중등교육과	1.~5. (현행과 같음) <u>6. 학생야영장의 운영지도·감독</u>	교 육 장
평생교육체육과	1.~5.(생략) <u>6. 학생야영장의 운영지도·감독</u> <u>7. (생략)</u> <u>8. (생략)</u>			1.~5. (현행과 같음) <u><삭 제></u> <u>6. (현행 제7호와 같음)</u> <u>7. (현행 제8호와 같음)</u>	<u><삭 제></u>
기획예산과	1. (생략) 2. <u>중학교육성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교 육 장	기획예산과	1. (현행과 같음) 2. <u>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u> -----	-----
재무관리과	<u>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도시계획(학교)시설결정 신청</u> <u>2. (생략)</u>	교 육 장	재무관리과	<u><삭 제></u> <u>1. (현행 제2호와 같음)</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재무관리과	<u><신설></u>			2. 교육청 및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u>교육장</u>
<u><신설></u>			<u>교육시설과</u>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도시계획(학교)시설결 정 신청	<u>교육장</u>

【예산안 : 2건】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세입 예산 : 3,256,100,033천 원

○ 일반회계 : 2,617,138,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특별회계 : 638,962,033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세출 예산 : 3,256,100,033천 원

○ 일반회계 : 2,617,138,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있음(내역 : 별첨)

○ 특별회계 : 638,962,033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2005년도 경상북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증액조서】

(단위: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증 액	비 고
		총 계	950,000	
	의회사무처	1건	30,000	
		상임위원회 지원활동 여비	20,000	
		국외 직원여비	10,000	
	농정국	1건	100,000	
277		소 부루세라병 소독약 구입	100,000	
	과학정보산업국	1건	30,000	
		국제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30,000	
	문화체육관광국	1건	10,000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10,000	
52		예비비	780,000	

【감액조서】

(단위: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증 액	비 고
		총 계	△ 950,000	
	의회사무처	1건	△ 60,000	
18		승용차(1대)	△ 60,000	
	보건복지여성국	1건	△ 500,000	
151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건립비	△ 500,000	
	농정국	2건	△ 300,000	
276		명주박물관 건립	△ 200,000	
277		한우품평경진대회	△ 100,000	
	경제통상실	1건	△ 10,000	
358		지방국제교류협력사업	△ 10,000	
	소방본부	1건	△ 80,000	
521		고령소방서 신축설계비	△ 80,000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세입 예산

○ 예산액 : 2,166,164,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세출 예산

○ 예산액 : 2,166,164,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건의 · 결의안 : 3건】

- 연구개발(R&D)특구지정 요건완화 촉구 건의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연구개발(R&D)특구 지정요건 완화 촉구 건의문

그간 참여정부는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제일의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특구 지정, 미래형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식기반도시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국회의 입법심의 과정에서 반영한 개방형 연구개발특구법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상위법을 사문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한 대덕지역의 연구개발 인프라에 준하는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지방 및 민간부문의 자생적 연구개발 역량을 도외시 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방향에도 배치된다.

첨단소재 R&D특구를 지향하는 포항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포항공대와 글로벌 기업 POSCO, 세계 다섯 번째이자 국내 유일의 방사광가속기연구소, 국내 최대의 소재분야 민간종합연구소인 포항산업 과학연구원(RIST), 10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포함된 지능로봇 분야의 전문연구소인 포항지능로봇연구소(PIRO) 등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 및 성공 노하우가 조화된 국내 최대의 기술 및 인재 집산지이며,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핵심기술을 선도해 온 핵심거점이자 구미·대구·울산·부산·창원을 아우를 수 있는 영남권 산업허브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 및 실용화라는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최적의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덕만을 한정하는 폐쇄형이나 다름없는 연구 개발특구법 시행령(안)의 지정요건에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역량을 포함 시켜, 종합특구를 지향하는 대덕과는 달리 포항을 첨단소재 분야의 특화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 I. 지역과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과 개방형 연구개발특구법의 입법취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은 지역의 입지적 여건과 특성, 연구개발 인프라, 지역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I.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를 열거하기 보다는 지역 및 민간의 자생적 연구개발 역량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지역 또는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형식적인 연구기관의 “수” 보다는 연구기관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I. 따라서, 시행령(안) 제5조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연구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국가적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도 추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5. 6. 9.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310
----------	-----

제안년월일 : 2005. 5.3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하반기에 심사해야 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산안과 2006년도 상반기 중 심사해야 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내 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전체 15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한다.
- 활동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능률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이 중심이 되어 경쟁력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정책이므로 일관되게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침체된 지방에 역동적 발전의 도화선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 여당에서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어느 일정지역으로의 배치 결정으로 인하여 유치에 실패한 지역들의 불만 제기로 오는 10월의 재·보선과 내년 5월의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잔류’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거나, ‘다른 공공기관 없이 한국 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만 배치시킨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의 선정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시·도의 면적을 감안한 결정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선정시 1단계평가에서 1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안배 등의 이유로 배제되었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형 국책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

이에 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성공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시급한 정책이므로 차질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라.
1. 이전기관의 시·도별 배치계획을 정치적인 논리를 접목시키지 말고 이전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타당성을 제시하라.
1. 경상북도는 전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18%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면적과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을 경상북도에 이전하라.
1. 지방육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의 지방투자 심리를 축소하여 균형발전에 역행을 초래하므로 先지방육성 後수도권관리의 원칙을 고수하라.

2005. 5. .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대정부 촉구 결의 수정안

결 의 안	수 정 안
특히, 경상북도는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선정시 1단계평가에서 1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안배 등의 이유로 배제되었고, <u>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경북지역에 이전되어야만 한다.</u>	특히,....., <u>참여정부 출범이후 대형 국책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u>
이에 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시급한 <u>사안임에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시기를 6월 중순으로 연기하고,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한국전력공사를 이전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u>	이에..... <u>사안임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성공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며</u>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시급한 정책 이므로 차질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라.	(원안과 같음)
1. 이전기관의 시·도별 배치계획을 정치적인 논리를 접목시키지 말고 이전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타당성을 제시하라.	(원안과 같음)

결 의 안	수 정 안
1. 경상북도는 전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북북부 지역 1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18%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u>면적을 감안하여</u> 다수의 공공기관을 경상북도에 이전하라.	1. 경상북도는..... <u>면적과</u> <u>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공사 등</u>
1. <u>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20기중 10기 (50%)가 있고, 8기(경주4, 울진4)가 추가 건설계획으로 있으며, 수도권(서울시, 경기도)을 제외하고는 전국최대 전력판매 지역이며 원자력발전 집단지역으로 국가에너지산업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전력공사를 경상북도에 이전하라.</u>	<삭제>
<신설>	1. <u>지방육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의 지방투자 심리를 축소하여 균형발전에 역행을 초래하므로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관리의 원칙을 고수하라.</u>

【동의안 : 2건】

- 2005년도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보전 지방채발행안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보전 지방채 발행(안)

I.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경기부진에 따른 국가의 세수결손으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581억원 결손
-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시설사업비 등이 조기 발주·집행되어,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기를 놓쳐 자금없는 이월사업 발생으로 추경재원 부족

II.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를 준용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III. 지방채 발행 계획

- 사업명 :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보전
- 발행계획 : 17,574백만원
- 차입선 : 금융기관채 증서차입
- 차입조건 : 일시상환 (연리 : 5%, 변동금리)
- 상환부담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금 및 이자 지원
- 차입시기 : 2005년도
 -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입시기 적의조정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채 발행 승인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잉여금	결산잉여금초과 결손액	합 계
	교육부 원리금 부담 기 채 승 인 액	교육청 원리금부담 기 채 승 인 액	
경북교육청	17,573,076	40,529,806	58,102,882

※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미교부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교 부 액	미교부액
지방교육양여금	242,271,360	184,168,478	58,102,882
합 계	242,271,360	184,168,478	58,102,882

【기타안 : 1건】

-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의 건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회위촉기간연장의견

의안 번호	307
----------	-----

제 의 년월일 : 2005. 5. 21

제 의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1. 주 문

경상북도의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경상북도교육청의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을 연장한다.

2. 제 의 사유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 대비 업무 과다와 토요일무제 등 공휴일이 겹쳐서 검사 일정이 부족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검사와 개선·발전적인 검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검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3. 제 의 내용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회위촉기간을 당초 20일간에서 30일간으로 다음과 같이 10일을 더 연장한다.

- 당초 기간 : 2005. 5. 20 ~ 6. 8(20일간)
- 연장 기간 : 2005. 6. 9 ~ 6. 18(10일간)

의정활동보고서(제199회 임시회)

2005. 7 인쇄 / 2005.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